

Issue Brief

# 국외투과단체 법률 도입에 따른 연기금 고려사항



삼일회계법인

# 들어가기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BEPS(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 방지협약’ 가운데 ‘역혼성단체 방지 규정’은 2022년부터 시행됐습니다. 역혼성단체란 동일한 조직을 놓고 국내와 해외간 법률적·세무적 해석이 다른 단체를 뜻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해외파트너십같은 특수목적법인(SPC)으로, 국내에서 법인으로 인정되지만 해외서는 이익을 단순히 자국으로 이전하는 도관(파트너십) 조직으로 규정됩니다.

OECD는 이런 역혼성단체가 탈세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각국에 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유럽연합(EU)가 역혼성단체에 대해 세금을 물리고, 미국이 조세조약상 감면세율의 적용을 제한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규제에 대한 국내 대응이 늦어지면서 연기금, 공제회를 비롯해 해외에 투자한 개인 및 법인 기업이 수조 원에 가까운 세금을 더 낼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듬해인 2023년부터 시행된 국외투과단체 신고제도는 혼성불일치로 인해 해외에서 추가로 과세될 위험을 피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연기금을 포함한 국내 투자자의 경우, 외국에 투자한 단체 또는 법인이 요건을 충족한다면 국외투과단체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통해 연기금이 추가 부담해야 할 신고 의무나 세금 납부는 없습니다.

혼성불일치에 따른 역혼성단체 규제는 미국, EU 뿐만 아니라 향후 호주, 영국 등 다른 나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기금뿐만 아니라 해외로 진출하는 일반 기업들은 신고제도에 대해 숙지하고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이슈브리프에서는 이 제도의 도입 배경과 대상 및 영향 등에 대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 Agenda

---

|                      |    |
|----------------------|----|
| 1. 국외투과단체 법률 개요 및 이슈 | 03 |
| 2. 국외투과단체 법률 도입 배경   | 04 |
| 3. 국외투과단체 법률 내용      | 07 |
| 4. 신고대상 선정기준         | 08 |
| 5. 신고에 따른 영향         | 09 |
| 6. 결론: Implication   | 11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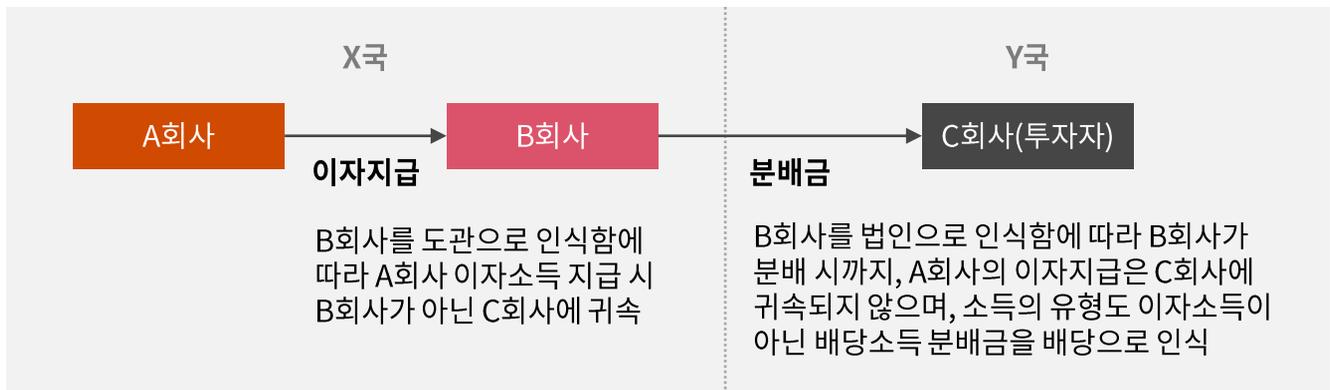
# 1. 국외투과단체 법률 개요 및 이슈

- 2023년 1월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제도(이하 국외투과단체 신고제도)가 시행되었음.
- 국외투과단체란 다음 두 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해외 단체를 말함.
  - ① 외국법인, 국외투자기구, 법인 아닌 단체와 유사한 단체(이하 외국법인 등),
  - ② 외국법인 등이 설립된 국가에서 외국법인 등이 아닌 그 주주, 출자자 또는 수익자가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단체
- 연기금을 포함한 국내 투자자가 외국에 투자한 단체 또는 법인(이하 해외투자법인)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외투과단체로 신고 가능
- 국외투과단체 신고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신고 대상과 신고에 따른 영향을 잘못 이해하여 신고 여부에 대한 결정 및 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있음.
- 이에 따라 관련 법률 도입 배경과 내용을 살펴보고, 해외투자법인에 대한 신고 대상 선정 기준과 신고에 따른 영향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 2. 국외투과단체 법률 도입 배경

- 해외투자법인은 보통 파트너십의 형태로 설립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러한 파트너십에 대하여 각 국가마다 법률적·세무적 해석의 차이(이하 혼성불일치)를 이용한 조세회피가 많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
- 예를 들어, 구조도 1에서와 같이 Y국의 C회사(투자자)가 X국의 B회사에 투자하는 경우, X국에서 B회사를 비과세 하는 세법의 성격을 따라 도관체(이하 투명체)로 인식하고 Y국에서는 B회사의 법률적 형식을 따라 법인(이하 불투명체)으로 인식하는 경우 혼성 불일치가 발생

구조도 1



- 혼성불일치가 가져오는 문제는, 과세되지 않은 소득이 다른 국가로 이전되는 것이 가능함. 예를 들어, 구조도 1에서 X국에서 이자지급 시 X국과 Y국의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되고, 다시 Y국에서는 법인으로부터의 분배는 배당소득이므로, 이자 성격의 소득이 배당소득으로 바뀜에 따라 배당소득에 비과세하는 Y국의 내국세법에 따라 비과세 될 수 있음. 또한, B회사가 실제 분배시까지 C회사 단계에서 수익인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과세가 이연될 수 있음.
- 이렇게 국가들 사이에 혼성불일치를 불러오는 법인을 역혼성단체(Reverse hybrid entity)라고 칭함.

- 이러한 역혼성단체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미국과 EU 규정은 다음과 같음.

i) 미국 연방세법 894(c) 및 재무부규정(Regulation)1.894-1(d)

- ✓ 투자자들이 역혼성단체를 통해 미국 내 투자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투자자들이 거주하는 거주지 국가에서 해당 역혼성단체를 투명체로 취급하는 경우에만 미국과의 조세조약상 세율 적용을 허용
- ✓ 예를 들어 한국의 연기금이 역혼성단체인 해외투자법인을 통하여 미국으로부터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구조도 2 참조], 연기금이 소재한 한국에서 법률상으로 그 역혼성단체를 투명체로 취급하여야 관련 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상 세율이 적용됨.
- ✓ 투명체의 요건으로 관련 미국법상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① 투자자가 역혼성단체를 통해 받는 미국 투자소득의 종류가 투자자거주지국에서 바뀌지 않아야 함.
  - ② 역혼성단체가 수령한 투자소득이 실제 투자자에게 분배됐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투자자가 투자소득을 수취하는 것으로 간주돼야 함.

구조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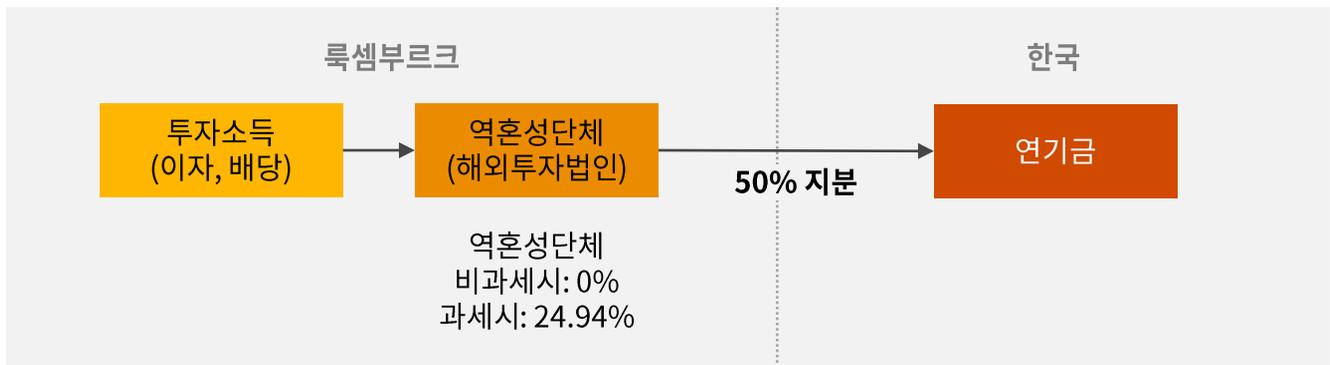


- ✓ 만약,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상 세율 (배당의 경우 15%) 대신 30%의 미국 내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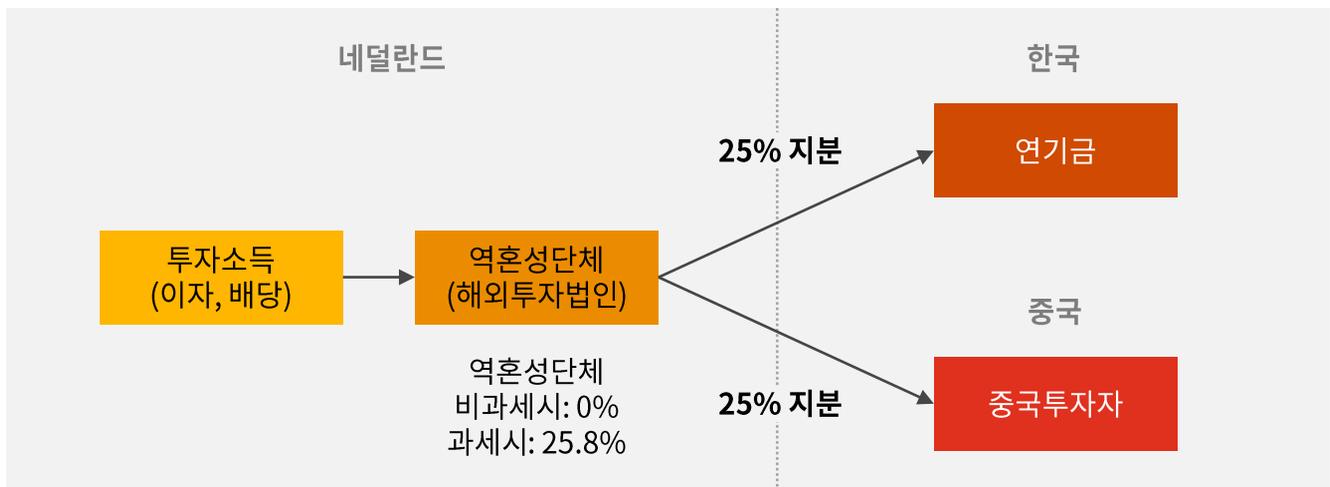
ii) EU Directive ATAD II 규정

- ✓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조세회피 방지협약(Directive ATAD II, Anti-Tax Avoidance Directive II)에 따라 시행됨.
- ✓ 미국과 유사하게 역혼성단체 소재지국에서 투명체로 취급되는 단체가 투자자의 소재지국에서 불투명체로 취급되는 경우 적용되며, 이 경우 투명체 취급으로 비과세 되었던 법인세를 과세함.
- ✓ 위의 규정의 적용은 EU국가별로 다른데, 예를 들어 룩셈부르크의 경우에는 역혼성단체를 불투명체로 취급하는 투자자의 지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 적용[구조도 3참조]되며,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투자자별 지분이 50% 이하인 경우에도, 불투명체로 취급하는 국가별 투자자지분의 합계가 50%를 넘는 경우에는 적용됨.
- ✓ 예를 들어, 한국 투자자가 25% 지분을 소유한 네덜란드 역혼성단체에 마찬가지로 중국의 투자자가 25%지분을 소유한 경우[구조도 4 참조], 만약 중국과 한국에서 네덜란드 역혼성단체를 불투명체로 취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율 25.8%로 과세됨.

구조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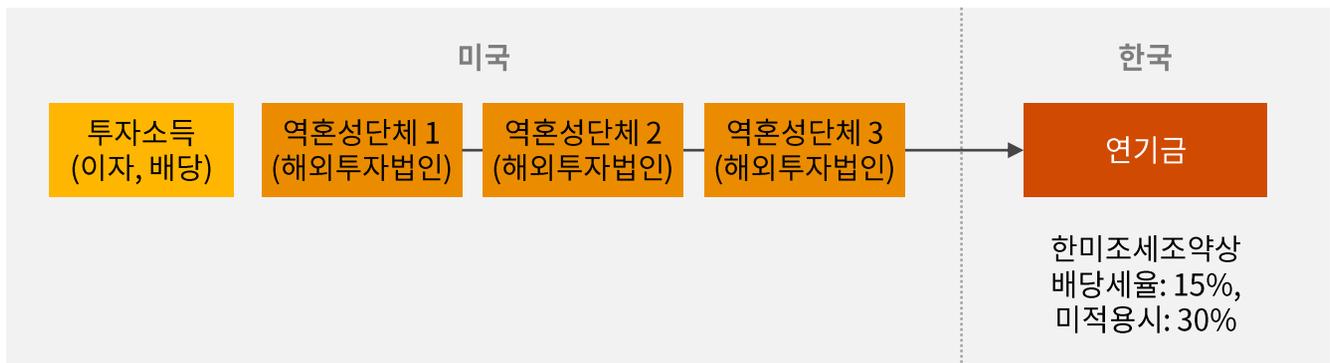
구조도 4



### 3. 국외투과단체 법률 내용

- 주요 내용:** 앞서 살펴본 미국연방 세법과 재무부 규정, 그리고 EU의 조세회피방지협약에 따라 국내 투자자들이 역혼성단체로 분류되는 해외투자법인에 투자하는 경우, 미국에서는 투자소득에 대하여 15%의 추가과세가, EU에서는 동 소득에 대하여 EU국가별로 약 24~26%의 추가적인 법인세 과세가 발생하게 됨. 이에 따라,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투자시 해외투자법인의 혼성불일치로 인해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에서도 해외투자법인을 투명체로 취급하는 법률이 필요해지면서 신설되었음.
- 신고 주체:** 신고의 주체는 아래와 같이 해외투자를 하는 모든 거주자 및 국내 단체에 해당하며, 직접 투자를 하는 연기금의 경우는 직접 신고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통해 투자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관련 투자신탁이 신고를 할 수 있음.
  -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 2) 투자신탁, 투자조합 / 3)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 및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자산위탁 등의 경우 각 기금(수탁기관 포함)·한국투자공사 등이 신청
- 신고 기한:** 법률상으로 과세특례가 최초 적용되는 과세연도 또는 회계기간에 대한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게 되어있고, 또한, 혜택 적용을 위해서는 2023년 신고가 완료되어야 함. 단, 2024년 현재 미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 작성 시 특례규정적용연도를 소급하여 기입하는 것이 필요함.
- 필요 서류:**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 적용신청서와 국외투과단체임을 입증하는 서류. 법에 입증을 위한 구체적인 제출서류는 나열되어 있지 않으나, 실무적으로 국외투과단체의 설립등기부등본 외에 약정서류(subscription document)등이 필요함.
- 신고 방법:** 신고방법은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적용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위의 필요서류와 함께 제출하고, 이후 세무서로부터 신고확인증을 수취함으로써 신고완료.
- 다단계해외투자법인을 통해 투자하는 경우[구조도 5참조], 연기금이 직접 투자한 해외투자법인(구조도의 역혼성단체 1)을 관할세무서에 국외투과단체로 신고 시 하위단체(구조도의 역혼성단체 2와 3)는 별도의 신고서 제출 없이 특례적용 가능. 신고서에 특례를 적용 받으려는 단체의 이름을 추가로 기입하는 것이 필요함.

#### 구조도 5



## 4. 신고대상 선정기준

### 미국

- 연기금이 미국 또는 이외 지역에 설립된 해외투자법인에 투자하고, 해외투자법인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배당, 이자, 로열티, 임대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는 모두 신고대상임.
- 미국에서 양도차익소득(capital gains)만 발생하는 경우는 신고대상이 아님.

### E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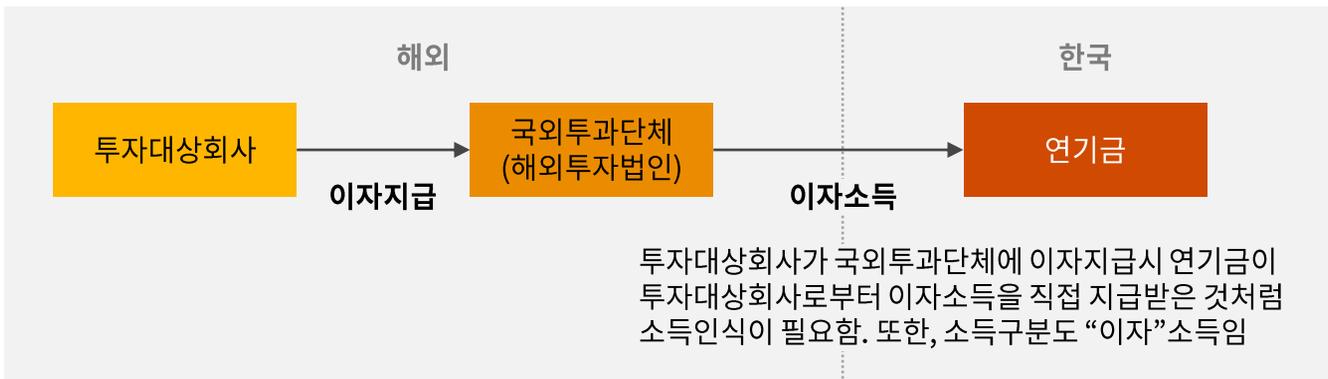
- 연기금이 EU 지역에 설립된 해외투자법인에 투자하고, EU 지역으로부터 해외투자법인을 통해 소득(모든 유형의 소득 포함)을 지급받는 경우는 신고 대상임.
- 단, 해외투자법인의 지분율에 따라 EU국가별로 규정이 다르므로, 지분율에 따라 국가별 신고여부 판별 필요.
- 또한, 지분율 조건이 있는 경우에도, 다른 단체와 투자 의사결정을 함께 결정하는 단체 역시 자본 또는 의결권을 보유하는 것으로 간주됨. 즉, 함께 행동하는 (“acting together”) 각 단체는 함께 행동하는 다른 단체의 EU 단체 지분율 혹은 의결권을 함께 보유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

## 5. 신고에 따른 영향

### ■ 연기금이 해외투자법인에 직접 투자한 경우

- ✓ 국외투과단체 신고의 효과: 해외투자법인을 국외투과단체로 신고한 경우[구조도 6 참조],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의 소득구분은 해당 연기금이 국외투과단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 투자하였을 때와 동일하게 발생하였을 소득구분과 인식기준을 의미함.
  - ① 소득구분 일치: 출자자 등에게 귀속되는 소득은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의 구분에 따름. 예를 들어, 국외투과단체에 이자로 소득귀속 시 출자자인 연기금에 이자소득으로 소득인식
  - ② 소득 인식시기: 국외투과단체에 소득 귀속 시 그 출자자 등에게 소득 귀속되는 것으로 봄. 즉, 소득 인식시기와 관련해서는 마치 국외투과단체가 없는 것처럼 출자자에게 소득이 즉시 귀속되는 것으로 봄.
- ✓ 연기금이 직접 국외투과단체에 투자한 경우, 대부분의 연기금은 비과세법인인 경우가 많아 세무상 추가신고의무나 세금 추가 납부 등의 영향이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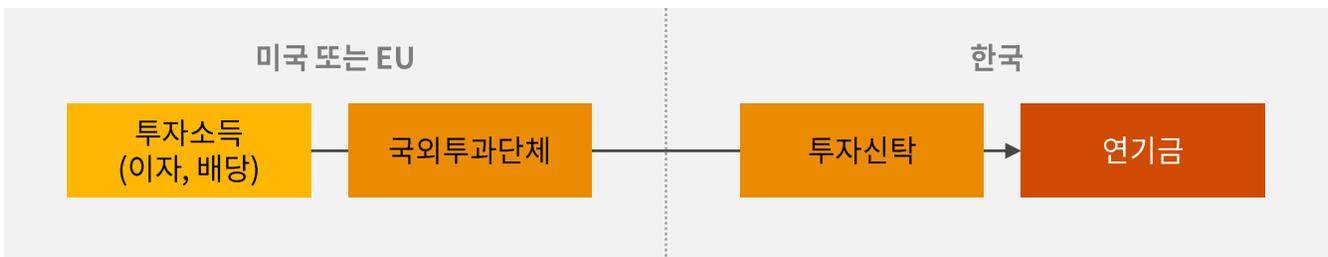
구조도 6



■ 연기금이 국내투자신탁을 통해 해외투자법인에 투자한 경우

- ✓ 연기금이 국내투자신탁(이하 “국내펀드”)를 통해 투자하는 구조에 있어서, 국외투자단체신고를 하는 경우[구조도 7 참조]에는 국외투자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은 국내펀드에 귀속되는 소득으로 보게 되며, 그 소득의 세무상 유형은 해외펀드에 귀속되는 소득의 소득구분에 다르나, 이는 세무상 기준이므로 국내펀드에서는 해외펀드에 대한 국외투자단체신고로 인한 소득의 유형과 인식시기와 관련하여 회계처리의 변경이 필요하지 않음.
- ✓ 또한, 세무상으로도 국내펀드는 비과세단체이므로 신고로 인해 세무상 추가적인 납세의무나 신고의 무가 부과되지 않음.
- ✓ 그리고 국내펀드에서 수익자에게 분배되는 금액과 관련하여, 국외투자단체의 신고에 따라 해외펀드로부터의 세무상 손익인식시점이 달라진다고 해서 이러한 결산을 통한 이익금의 분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 결과적으로 국내펀드 단계뿐만 아니라 수익자 단계에서도 국외투자단체의 신고로 인하여, 추가적인 세무상 신고의무나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없음.

구조도 7





## 6. 결론: Implication

- 지금까지 역혼성단체에서 발생하는 혼성불일치를 통한 조세회피를 규제하기 위한 미국과 EU의 관련 규정과 이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국외투과단체 신고제도의 내용과 신고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았음.
- 미국과 EU의 관련규정의 도입으로, 연기금의 해외 투자소득에 대하여, 미국에서는 추가 15%, EU지역에서는 국가별로 약 24~26%의 추가세액을 부담해야 할 수 있었음.
- 다행히 2023년 도입된 국외투과신고제도로 인하여, 해외투자법인을 국내 세법상 국외투과단체로 신고함으로써 미국과 EU 국가에서 추가적인 세금 납부의 위험 등을 피할 수 있게 됨.
- 국외투과단체 신고는 이와 같이 혼성불일치로 인한 해외에서의 추가과세위험을 피하기 위한 제도로서, 신고로 인하여 연기금이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할 신고의무나 세금납부는 없음.
- 국외투과단체의 신고여부는 기존 투자건뿐만이 아니라 미래 투자건에 대하여도 확인과 검토가 필요함.
- 마지막으로, 혼성불일치에 따른 역혼성단체 문제는 연기금에만 국한되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해외영업을 하는 일반 대기업 등 내국법인이 해외 진출시 신고가 필요할 수 있으며, 역혼성단체 관련 규정은 미국과 EU뿐만이 아니라 호주, 영국 등 다른 국가로까지 입법이 예정되어 있어 향후 이런 지역투자 시 국외투과단체의 신고가 필요할 수 있음.



# Author Contact

## 박태진 Partner

삼일PwC 국제조세 및 해외 투자 세무자문

taejin.park@pwc.com

## 출처

1. 미국 연방세법 894(c) 재무부규정(Regulation)1.894-1(d)
2. EU Directive ATAD II 규정
3. 룩셈부르크법인세 법 Article 168quarter
4. 네덜란드법인세법 Article 12aa to 12 ag
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의 2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관한 특례】
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0조의 2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7. 8월 22일 한국경제신문 <OECD 권고에도 모두 손놓고 있다가...국민연금·KIC, 3조 날릴 판>
8. “외국 역혼성실체방지규정 도입, 우리기업 해외투자 불이익 없게 관련법령 개정 검토” 대한민국정 책브리핑

[www.samil.com](http://www.samil.com)

삼일회계법인의 간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 및 지식전달을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구체적인 회계이슈나 세무이슈 등에 대한 삼일회계법인의 의견이 아님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간행물의 정보를 이용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삼일회계법인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본 간행물의 정보와 관련하여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삼일회계법인 전문가의 자문 또는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S/N: 2405W-RP-028

© 2024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d. "PricewaterhouseCoopers" refers to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or, as the context requires, the PricewaterhouseCoopers global network or other member firms of the network, each of which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